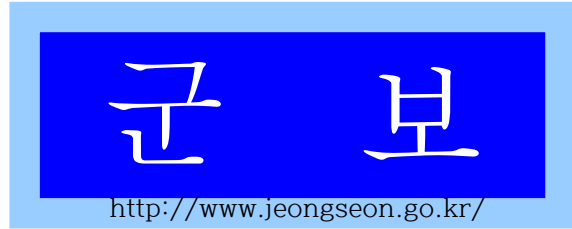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501호 2019. 10. 11. (금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9- 217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완충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.....2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9-1086호 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 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 · 공고.....5
- 정선군 공고 제2019-1090호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·운영 및 기금 설치·운용 조례안 입법 예고.....7
- 정선군 공고 제2019-1095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(안) 입법예고.....15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19- 217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완충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
1. [강원도고시 제2019-395호(2019.10.04.)]로 고시한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완충녹지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10월 11일

정 선 군 수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임계면 도시지역에 정선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 장기 미집행 도로인 중로1-2호선에 대하여 민간소유자의 폐지요청으로 이에 민원을 해소하고, 교통의 효율성 및 계획된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제고시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 도로, 완충녹지)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2.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1) 교통시설(도로)결정(변경) 조서

■ 도로 총괄표

유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
합계	3	3,238	48,936	1	1,747	27,258	2	1,491	21,678	-	-	-
광로	-	-	-	-	-	-	-	-	-	-	-	-
대로	-	-	-	-	-	-	-	-	-	-	-	-
중로	2	2,943	46,492	1	1,747	27,258	1	1,196	19,234	-	-	-
소로	1	295	2,444	-	-	-	1	295	2,444	-	-	-

■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폐지	중로	1	2	20	주간선 도로	742	중로 1-1 송계리 803-2전	남측구역계 봉산리 243-2도	일반 도로	임계 중고교	강고112호 (87.9.9)	국도 35호선
기정	중로	2	1	15	보조간 선도로	1,702	중로 1-2 송계리 803-5도	중로 1-1 송계리 253-10도	일반 도로	임계면 사무소	강고112호 (87.9.9)	국도 42호선
변경	중로	2	1	15	보조간 선도로	1,747	중로 1-1 송계리 786-3도	중로 1-1 송계리 253-10도	일반 도로	임계면 사무소	강고112호 (87.9.9)	국도 42호선
기정	중로	2	2	15	보조간 선도로	950	중로 1-1 송계리 657-3도	중로 1-2 봉산리 240-3도	일반 도로	임계 버스 터미널	강고112호 (87.9.9)	국도 35호선
변경	중로	2	2	15 ~ 20	주간선 도로	1,196	중로 1-1 송계리 657-3도	남측구역 계 봉산리 243-2도	일반 도로	임계 버스 터미널	강고112호 (87.9.9)	국도 35호선
기정	소로	2	15	8	국지 도로	292	중로 2-2 봉산리 241-77	중로 2-2 봉산리 240-10전	일반 도로	1호 완충 녹지	강고7호 (90.1.19)	
변경	소로	2	15	8	국지 도로	295	중로 2-2 봉산리 241-77	중로 2-2 봉산리 240-10전	일반 도로	-	강고7호 (90.1.19)	

■ 도로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1-2	-	폐지	해당노선은 장기미집행 도로로 민간소유자의 폐지요청에 따라 개설이 어려운 도로에 대하여 폐지
중로2-1	중로2-1	연장변경 L=1,702m→1,747m 증)45m	중로1-2호선 폐지에 따라 접속부 선형변경
중로2-2	중로2-2	연장변경 L=950m→1,196m 증)246m	중로1-2호선의 미개설 부분을 폐지하고 개설된 부분을 중로 2-2호선과 합병하여 연장 및 폭원 일부 변경
소로2-15	소로2-15	선형변경 L=292m→295m 증)3m	중로1-2호선 폐지에 따른 접속부 가각 선형변경

2) 공간시설(완충녹지)결정(변경)조서

■ 녹지 결정 조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①	녹지	완충녹지	임계면 봉산리 240-9 일원	1,010	감)1,010	-	강고 제112호 (87.9.9)	제2종 일반주거 지역

□ 녹지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완충녹지	폐지	중로1-2호선의 폐지로 완충녹지 설치원인이 제거되어 필요성이 상실되어 시설 폐지

3. 군관리계획(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9-1086호

**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
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**

정선군 고한읍 일원 「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0월 11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개요

가. 건 명 : 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
나. 위 치 :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-26번지 일원

다. 면 적 : 46,030㎡(변경없음)

라. 주요변경내용 : 지구단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에서 관광휴양시설용지(야생화 쿠키체험장)로 일부 구역이 변경이 됨

2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
3. 공람장소 및 기간

가. 공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과, 고한읍사무소

나. 공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(2019. 10. 11~ 10. 28)

4.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조서
: 실음 생략

5. 군관리계획(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도면
: 실음 생략
6.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: 정선군청 도시과, 고한읍사무소로 서면 제출
7. 기타사항 :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고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(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19-1090호

정선군 의료재단 설립·운영 및 기금 설치·운용 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의료재단 설립·운영 및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0월 10일

정 선 군 수

1. 제정이유

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및 군립병원 운영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정선군 의료재단의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정선군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(안 제6조)
- 라. 정선군 의료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정선군 의료재단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정선군 의료재단의 공무원 파견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19. 10. 10. ~ 10. 17. (7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(참조 : 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 및 문의처

○ 주 소: (우)2612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

정선군보건소 군립병원지원 TF

- 전 화 : 033-560-2060
- 이 메 일 : ironage0305@korea.kr
- 팩 스 : 033-563-4000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이메일, 우편, 팩스, 직접방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·운영 및 기금 설치·운용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의료재단 설립·운영 및 기금 설치·운용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군립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군민의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하여 의료재단 설립·운영 및 기금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관계법령”이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을 말한다.
2. “군립병원”이란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「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정선군 군립병원을 말한다.
3. “군민”이란 정선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주민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·운영 및 기금 설치·운용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2장 의료재단

제4조(설립)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의료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재단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법인으로 한다.

③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군의 관할구역에 두되, 그 구체적 위치는 해당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제5조(사업) ① 재단은 군민의 지속적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군립병원의 관리 운영
2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순회진료 등 공익을 위한 보건사업
3. 지역거점 농촌형 공공의료기관의 선정 및 운영 관련 사업
4.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

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

수 있다.

1.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, 강원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또는 군의 대행사업
2. 국가, 도 또는 군의 위탁사업. 다만, 해당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때에 한정한다.
3.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
-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군의 사무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의 의료복지 실정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기본재산 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 ③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군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3장 공공보건의료 기금

제7조(설치 및 구분)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(이 조례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, 그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해당 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그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조성 및 용도) ① 기금의 조성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적립기금
 - 가. 국가 및 도·군의 출연금
 - 나. 자발적 기부금 및 후원금
 - 다. 재단의 사업 수익금
 - 라. 그 밖의 수입금
2. 운용기금
 - 가. 국가, 도 또는 군의 출연금
 - 나. 특정사업 목적의 자발적 기부금
 - 다. 기금의 이자 수입금
 - 라. 그 밖의 수입금
-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적립기금: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 2. 운용기금: 다음 각 목의 비용에 충당한다.

가. 재단의 운영비

나. 재단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비

제9조(관리·운용)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보건소장

2. 기금출납원: 군립병원 지원 TF 담당

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정선군 공공보건의료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제2항의 운용심의위원회는 「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4장 보칙

제10조(공무원의 파견) 재단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.

1.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

2. 제5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사업

3. 제6조 제3항에 따른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대부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군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및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출연금의 일부 및 사무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3조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 하고, “제4호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4. 「정선군 의료재단 설립·운영 및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심의”

관련법령발췌

☐ 정선의료재단 설립

법령명	내용
의료법 제33조 제2항 (개설 등)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 또는 의원,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, 한의사는 한방병원·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,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. 1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 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.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(이하 “의료법인”이라 한다) 4. 「민법」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,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☐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

법령명	내용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사업 등)	-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 1. 문화, 예술, 장학(img36377411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☐ 법인 설립허가

법령명	내용
민법 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)	-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(설립허가 기준)	-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 재산”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정선군 공고 제2019-1095호

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「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0월 8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이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(안 제4조 3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(참조: 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의견 제출 및 문의처

- 주소: (우 26131)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
- 전화: 033-560-2236
- 팩스: 033-560-2590
- 이메일: kms4820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제출서식 1부.

2.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고
	찬 성	반 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장의 업무)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·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.

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,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
2.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, 자율적 업무처리
3.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
4.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
5.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

제3조(복무)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,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.

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.

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·면장에게 보고 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.

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·면장, 인수자,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비변상)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,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 (신설)

제5조(편의제공) 이장은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, 읍·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
2. 향토지 구독
3.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
4. 체육대회, 수련대회, 단합대회 등 문화·체육행사 지원
5.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
6. 다른 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·체육·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
7. 자살예방 활동 수당 지급
8. 산불 예방 활동 근무에 필요한 피복 지원
9. 신임 이장 현판 제작 지원
10.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